

환경부 공고 제2012-409호

## 「악취방지법(안)」 입법예고

2012년 8월 13일 / 환경부장관



### 1. 제안이유

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기체상의 물질이외에도 미세입자들에 수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, 「세종특별자치시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」제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권한 근거마련 및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「악취」 용어 재정의 신설(안 제2조1호 개정)

- 1)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을 “기체”로 한정하여, 입자상으로 존재하는 악취물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

#### 나. 개선권고 등 특별자치시장에게 권한 부여(안 제14조)

- 1) 「세종특별자치시시설치등에관한 특별법」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권한 근거 마련하기 위함

#### 다. 과태료부과 기관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권한 부여(안 제30조)

- 1) 과태료부과·징수사무에 대한 자치단체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 근거 마련(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 결정 사항)

환경부 공고 제2012-412호

##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2012년 8월 17일 / 환경부장관

### 1. 제정이유

빛공해를 예방하고 조명기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이 제정·공포(2013. 2. 2 시행)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

시·도지사는 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수립절차,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함

#### 나.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(안 제3조)

시·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, 생태·경관보전지역, 야생동·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

**다.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(안 제4조)**

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지역주민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제출 등 시·도지사  
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

**라.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·변경(안 제5조)**

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절차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에 준하여 규정함

**마. 빛방사허용기준(안 제6조에서 제7조)**

(1) 발광표면 휘도기준 및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각각 별표 1과 2로 정함

(2)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및 완화를 신청할 경우 행사개요,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등 승인신청서에 포함  
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

**바.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및 이행결과보고(안 제8조에서 제9조)**

(1) 시·도지사는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 
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(2) 위반내역, 조치기간, 보고시기 등 개선명령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

(3)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정하고 시·도지사의 이행결과 확인과정을 규정함

**사. 빛공해환경영향평가(안 제10조)**

관할 지역의 조명환경 조사,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 
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

**환경부 공고 제2012-442호**

##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
2012년 8월 31일 / 환경부장관

**1. 개정사유**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재설정하고, 비산  
먼지 발생사업장 지도·점검 횟수를 현실적으로 개선

**2. 주요내용**

가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존속기한 3년을 재설정(2015년  
9월 30일까지)

나.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·점검 횟수 변경

특별관리공사업 및 특별관지역 내 사업장은 월 1회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,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  
에는 월 2회에서 월 1회로 변경(안 제5조)

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 » 법령·정책 » 법령정보 »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